

# 論斷

## 캐나다 경찰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신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임준태\*

### 1. 서 설

舊소련 붕괴이후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부상한 캐나다.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경찰의 전통을 강하게 받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각국의 경찰제도는 꾸준히 소개되어 그 면모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방제국가로서 캐나다 경찰은 영국경찰적 특징과<sup>1)</sup> 이웃한 미국의 경찰적 특징을<sup>2)</sup> 함께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화된 경찰제도이면서, 특이하게도 연방경찰이 지방자치 경찰조직과 계약을 맺고 연방 경찰관을 파견하여 지역경찰로서 근무토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州단위 및 자치행정권은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으면서도, 경찰작용은 연방에 위탁한 특이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州(8개 州, 3개 準州)들이<sup>3)</sup> 州경찰을 유지하지 않고, 연방경찰에 州경찰 및 지방자치경찰사무를 위탁한 형태이다. 경찰사무를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다보니,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의 한 축으로서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Industry)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이고, 관련산업이 매우 발전하고 있다.<sup>4)</sup> 규모가 큰 도시나 지역에서는 고유한 자치체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자치단체들은 이른 바, “계약을 맺고 연방경찰을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식민개척 초기 및 이민 역사가 시작되면서, 프랑스경찰의 영향도 받았지만, 영국 경찰적 전통에 익숙해져 있다.
- 2) 연방제국가로서 경찰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역시 강한 지방분권적 특징을 갖고 있다.
- 3) 프랑스의 전통이 강한 동부의 2개주인 Quebec 州, Ontario 州는 자체 州경찰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방경찰 대신에 州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 4) Dantzker/Mitchell, Understanding Today's Police(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Scarborough, Ontario, 1998), p. 26.

구매”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책임과 권한 그리고 경찰활동의 제공 대상인 지역 주민과 경찰과의 관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시점에서 경찰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로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新정부 출범후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2005년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청사진까지 제시된 상태이다. 기초 혹은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경찰조직으로 결정 된다면, 경찰조직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 및 경찰조직간의 수준·역량, 치안서비스의 질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중앙정부와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캐나다 연방경찰과 州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에 의한 경찰력제공 관계, 경찰조직의 소속,<sup>5)</sup> 경찰력 배치실태, 인사관리(선발·채용과정, 신규교육, 계급 비율, 부서별 인원비율, 순찰근무방식 등), 형사사법기관간 예산 동향과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신규임용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은 또한 비교 경찰적 연구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캐나다 현지 경찰 관서를 방문하여<sup>6)</sup> 수집한 자료, 경찰관련서적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내용 등을 참고하였다. 특히 연방경찰(RCMP)과 British Columbia州 광역Vancouver경찰 및 Justice Institute B.C.(Police Academy)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 II. 캐나다 경찰의 역사 및 치안여건

### 1. 캐나다 개황

오늘날 캐나다경찰의 독특성을 보이게 된 이면에는 광활한 국토의 크기도 한 몫 하였다. 전체 면적은 9,984,670km<sup>2</sup>(남한면적의 100배)이며, 13개 州(10개의 州와 3개의 準州) 정착민들이 산재해 있는 거대한 북극 인접지역에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다양성이야말로 다양한 지역공동체에 경찰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끊임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 2002년 10월 현재, 인구는 31,485,623명이다.<sup>7)</sup> 각주별 거주인구, 면적 및 경찰관 숫자는 다음 (표:1)과 같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몬트리얼 (3,549,000명), 토론토

5) 한국과는 달리, 법무부(Justice Minister), 州검찰총장(Attorney General) 혹은 사법총감(Solicitor General) 소속하에 경찰조직을 두고 있다. 한국과 같은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닌 것이 특징이며, 교정, 사법행정, 경찰행정 등이 동일 부서에 소속된 것이 또한 특이하다.

6) 필자는 2002년 12월~2003년 2월까지 캐나다 연방경찰(RCMP),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JIBC), 밴쿠버경찰청(VPD) 및 Simon Fraser 대학에서 연수한 바 있다.

7)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demo02.htm>

(5,030,000명), 광역밴쿠버(2,136,000), 오타와(862,000), 캘거리(993,000), 에드먼튼(967,000), 위니펙(685,000), 해밀턴(686,900), 케벡시(697,700) 등 대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sup>8)</sup>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미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캐나다의 지도(그림: 1)와 각주별 면적, 인구, 경찰관의 숫자(표: 1)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캐나다 국가지도



[표 1] 각주별 인구, 면적 및 경찰관수

| 州 및 準州                    | 인구(2002년)   | 면적                      | 경찰관(2002년) |
|---------------------------|-------------|-------------------------|------------|
| Newfoundland and Labrador | 531,600명    | 405,212km <sup>2</sup>  | 779명       |
| Prince Edward Island      | 139,900명    | 5,660km <sup>2</sup>    | 214명       |
| Nova Scotia               | 944,800명    | 55,284km <sup>2</sup>   | 1592명      |
| New Brunswick             | 756,700명    | 72,908km <sup>2</sup>   | 1306명      |
| Quebec                    | 7,455,200명  | 1542,056km <sup>2</sup> | 14,428명    |
| Ontario                   | 12,068,300명 | 1076395km <sup>2</sup>  | 22,627명    |
| Manitoba                  | 1,150,800명  | 647,797km <sup>2</sup>  | 2,219명     |
| Saskatchewan              | 1,011,800명  | 651,036km <sup>2</sup>  | 2,008명     |
| Alberta                   | 3,113,600명  | 661,848km <sup>2</sup>  | 4,884명     |
| British Columbia          | 4,141,300명  | 944,735km <sup>2</sup>  | 6,958명     |
| Yukon Territory           | 29,900명     | 482,443km <sup>2</sup>  | 126명       |
| Northwest Territories     | 41,400명     | 1346106km <sup>2</sup>  | 160명       |
| Nunavut                   | 28,700명     | 2093190km <sup>2</sup>  | 111명       |
| 총 계                       | 31,414,000명 | 9984,670km <sup>2</sup> | *58,414    |

\*: RCMP본부 및 同경찰학교 교육생 등 1,002명이 포함되었다.

8)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12.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토착민들과<sup>9)</sup> 새로운 이민자들에<sup>10)</sup> 대한 동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1960년대부터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시키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의 자원으로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경찰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죄투쟁의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구성원들에 민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언어권도 매우 다양한 바, 2001년 전체 인구 29,639,035명중에서 영어 사용자 60%(17,352,315명), 프랑스어 22.3% (6,703,325명), 중국어 2.8%(853,755명), 이태리 46.9만명, 독일어 43.8만명, 인도(핀잡어) 27.1만, 스페인어 24.5만명 등으로 나타났다.<sup>11)</sup>

## 2. 캐나다 경찰의 역사

### 1) 영국 근대 경찰적 전통

캐나다 경찰의 역할은 유럽의 전통을

반영하였는 바, Watchman시스템이 점차 정규경찰관(Constable)과 항구적인 경찰조직으로 점차 대체되었던 그러한 전통을 이어왔다.<sup>12)</sup> 캐나다 경찰의 구조, 작용 및 경찰활동, 조직의 많은 부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경찰시스템에서 유래되었다.<sup>13)</sup> 캐나다 근대경찰은 영국의 Robert Peel경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1829년 경찰개혁-The Metropolitan Police in London-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당시 수도런던경찰청에서 적용되었던 9가지 경찰활동(Police Behaviour)의 원칙은 오늘날 캐나다 경찰의 기능과 역할·조직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영국경찰의 역사적 측면은 캐나다 경찰의 철학, 이데올로기적 발전에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발전된 경찰시스템을 채용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제도를 발전시켰다.<sup>15)</sup> 식민지 경영이 경찰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 경찰시스템에 있어서 독특한 수많은 이슈들이 나타났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동부에서 서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과 정착민

9) 1996년 인구조사시에 확인된 원주민(Aboriginal population)은 799,010명으로서 전체 인구(28,528,125명)의 3.6%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554,290명, 혼혈족(Metis, 앵글로 아메리칸과 원주민간):210,190명, 에스키모족(Inuit, Eskimo): 41,080명 등이다.

10) 1961-1996년까지 이민자의 수는 약 391만명 정도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6%가 넘는 수치이다.

11)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demo18a.htm>

12) Dantzker, Mitchell, Understanding Today's Police(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 Scarborough, Ontario, 1998), p. 11.

13)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p. 14.

14) Seagrave, 1997, p. 18.

15) Seagrave, 1997, p. 19.

들이 갑절로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촉진 되었으며, 경찰관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토론토, 몬트리얼 그리고 벤쿠버와 같은 대도시에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느끼게 한다. 결국 경찰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sup>16)</sup>

### 2) 식민초기 연방경찰활동

#### (1) 북서부기마경찰시절(NWMP)

캐나다연방경찰인 RCMP의 기원은 1845년의 "Act for the Better Preservation of the Peace and the Prevention of Riots and Violent Outrages at the Near Public Works while in Progress of Construction"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동법안**으로, 경찰조직이 형성되었고, Welland and Saint Lawrence 운하 건설을 위해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중에 이들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임명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North West Mounted Police(NWMP)의 모델을 만들었다.<sup>17)</sup>

1868년 의회는 "캐나다 자치령 경찰조직(the Dominion Police Force)"을 설치하게된 "캐나다경찰에관한법(The Act Respecting Police of Canada)"을 통과시켰다. 이 조직은

거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으며, 연방법률 집행에 관련되었다. 그 경찰의 우선적인 책임은 연방정부의 청사를 경비하는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通貨偽造와 같은 법집행에 관련되었다. "자치령 경찰"은 자치단체 영역 밖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기관이 되었다. 비록 이론적으로 同경찰조직이 캐나다 전역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실제로는 그 관할권이 캐나다 동부지역에 국한되었다고 한다.

1873년 의회는 "사법행정과북서부지역 경찰조직설치에관한법률(the Act Respect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Force in the Northwest Territories)"을 통과시켰는 바, 캐나다 최초의 연방경찰인 The North West Mounted Police를 창설한 것이었다. NWMP는 아일랜드의 Royal Irish Constabulary를 모방한 것이었다.<sup>18)</sup> 그리고 창설한 첫 해에 300명의 경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軍隊 근무경력이 있는 者들이었다.<sup>19)</sup>

Mounted Police는 미국 상인들에 의하여 원주민들이 약탈당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존재를 느끼게 하였다. 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그 지역을 점유하는데 달려 있었다. 그래서 경찰조직은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정치적·경제적 주권을 확립

16) 1982년 제정된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1986년 제정된 Employment Equity Act, 1988년에 제정된 Multiculturalism Act 등이다.

17) Seagrave, 1997, p. 23.

18) Dantzker/Mitchell, 1998, p. 12

19) Seagrave, 1997, p. 23.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Mounted Police는 백인 정착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정복지와 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협상에 가담하였다. 남부지역의 국경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은 질서를 확립하면서 자유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는 바, 자유와 기본권이 먼저였으며, 질서는 훨씬 나중이었다. 경찰은 정착지와 광산에서의 세금징수, 관세징수 그리고 은행경비와 우편배달을 담당하면서, 캐나다와 미국간 국경지역에 대한 경비와 순찰임무를 맡았다.<sup>20)</sup>

NWMP는 대륙간횡단 철도건설 현장과 Klondike Gold Rush시절 Yukon주에 있는 金鑛채굴지에서의 질서 유지 임무를 맡았다. 당시 NWMP가 담당하였던 주요 직무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21)</sup>

- 범죄예방,
- 파렴치한 위스키 密去來者들로부터 인디언을 보호함으로써, 종족내부간의 폭력발생을 방지하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메리카 인디언 수族(Sioux)과의 대결을 해가면서, 인디언부족들과 캐나다정부와의 조약을 감시해가면서, 인디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
- 그리고 기근과 고난을 완화시키는 일(예를 들면, 궁핍, 질병 그리고 초원지역의 화재 등)이었다.

NWMP야말로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형성하고 再해석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가능한 외부 침입에 대하여 캐나다의 주권을 방어했다. NWMP경찰관들은 Ottawa에서 창설된 연방주권의 대리인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대중의 호의적인 반응과는 달리,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시민들은 그들의 광범위한 권한행사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찰관과 치안판사(Magistrates)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내부 조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높은 무단이탈율, 음주행위들과 같은 적절치 못한 행동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의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지역에 대한 경찰활동과 20세기까지 계속된 NWMP(북서부기마경찰)의 역할에 대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어려움이였다. 캐나다 태평양철도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쟁의와 1919년 위니펙에서 발생한 총파업 사태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위니펙에서 발생한 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역할이야말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상실하였지만, 그러한 경찰의 역할이야말로 그들의 가치를 연방정부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22)</sup>

20) Seagrave, 1997, p. 23.  
21) Seagrave, 1997, p. 24.  
22) Seagrave, 1997, p. 24.

### (2) 왕립 캐나다기마경찰시절(RCMP)

20세기 초반, NWMP는 750여명의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1920년에 들어서는 거의 1,600여명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1904년 영국의 Edward VII세는 그 경찰을 “Royal North West Mounted Police (RNWMP)”으로 공포하였다.

1905년 Saskatchewan州와 Alberta州가 창설되었다. 그들은 州경찰을 창설하는 대신에 RNWMP(왕립북서부기마경찰)가 그들의 州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었다.<sup>23)</sup> 그렇게 함으로써, RNWMP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1920년 연방정부는 RNWMP의 명칭을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왕립캐나다기마경찰)로 바꿨다. 그리고 North West Mounted Police Act를 개정하면서, RNWMP을 캐나다 자치령 경찰조직(the Dominion Police)과 합병하였다.

1917년 州경찰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Saskatchewan州와 Alberta州에서 약간 지체되었다. 그러나 몇 년 가지 않아서 Alberta州는 1928년에, Saskatchewan州는 1932년에 비로소 그들의 역할을 회복하였다. 同年 RCMP는 Manitoba州, New Brunswick州, Nova Scotia州 그리고 Prince Edward Island에서 州경찰에 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1950년에는 New Foundland와

British Columbia州가 추가되었다.<sup>24)</sup>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州정부들로부터 반대를 받지 않으면서, 州경찰로서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몇몇 지방자치 단체들과는 계약을 맺고(under contract), 자치경찰력을 제공하기 시작하 면서, 그들의 관할권을 확대해나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첫 번째 계약은 1935년 Manitoba州의 Flin Flon이라는 도시(mu- nicipal)와의 계약이었다. 이러한 지방자치 단체들이 계속하여 증가하였으며, 1994년경에 RCMP는 201개의 자치단체들과 10개 州와 2개의 準州에 대해 경찰력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sup>25)</sup>

### 3) 식민초기 州경찰활동

州경찰은 자치단체들 이외 지역에서의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州경찰의 발전은 RCMP의 발전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1867년의 “The Constitution Act”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刑法과 刑事訴訟法을 제정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법집행과 사법행정은 州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헌법은 다음과 규정하고 있는 바, 연방에 가입할 때 州정부는 州경찰조직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입법은 1870년에 Manitoba와 Quebec州에서

23) Seagrave, 1997, p. 25.  
24) Seagrave, 1997, p. 25.  
25) Seagrave, 1997, p. 25

통과되었으며, 1871년에는 British Columbia, 1901년에는 Ontario州, 1927년에는 New Brunswick州, 1928년에는 Nova Scotia州, 1930년에는 Prince Edward Island에서 각각 입법되었다. 그런데 Newfoundland州는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를 1872년에 창설한 바 있다. 1935년에 두 번째 州경찰-the Newfoundland Company of Rangers-을 도입하였다. 1930년대에, RCMP는 점진적으로 州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압력 이야말로 州정부가 독자적인 州경찰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sup>26)</sup> 1950년경, 2개 州-Ontario, Quebec-를 제외한 거의 모든 州들이 RCMP를 자신들의 州경찰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 온타리오州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 OPP)**

온타리오 州경찰(OPP)은 1909년에 창설되었다. 1913년경에 3개의 부서로 나뉘어졌으며, 1920년경에는 조직들이 확장·再조직되었다. 지역감독관 하에 9개의 지역에서 경찰이 활동하였다. 경찰의 토대는 온타리오州 북서부 개척지와 광산도시개발에 대한 책임을 맡으면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온타리오州 경찰과 RCMP의 발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척지 확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며, 둘 다 軍隊 근무경력이 있는 者들을 경찰관으로 채용하였다. 1944년에 “온타리오州 警察法”이 통과되었는 바, 온타리오州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계약을 맺고 온타리오州경찰(OPP)이 경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타리오州경찰은 북미 대륙에 있어서, RCMP처럼 가장 큰 경찰조직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27)</sup>

**(2) 퀘벡州경찰(Surete de Quebec: Quebec Provincial Police)**

퀘벡州경찰은 온타리오州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겨났다. 초보적인 경찰조직은 19세기 말엽에 등장하였다. 공식적인 경찰조직이 생겨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퀘벡州 경찰인 “Surete de Quebec: Quebec Provincial Police”은 1870년에 창설된 캐나다 최초의 州경찰인 셈이다. 그런데 당시 경찰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오늘날은 거의 13,47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sup>28)</sup> 캐나다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조직 중의 하나가 되었다.

RCMP나 OPP와는 달리, Quebec州내 도시경찰들은 계약에 기초한다기보다는 Quebec州 정부의 기관(관청)으로서 활동하고

26) Seagrave, 1997, p. 25.

27) 2002년 현재 온타리오 州경찰(OPP)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州경찰 16,899명과 州경찰로 활동중인 4,096명 등 도합 20,995명이다. 이 이러한 수치는 RCMP소속 전체 경찰관 15,343명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同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28)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있다.<sup>29)</sup> 1968년의 경찰법은 州경찰이 소규모 Town들과 시골 지역의 Communities 뿐만 아니라, 퀘벡州 숲지역에 대한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까지 맡도록 하였다.

**(3)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

또 다른 하나의 州경찰은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이다. 공식적으로 The Newfoundland Rangers는 1872년에 창설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St. John市만을 담당하고 있다. 북미대륙에서 유일하게 무장하지 않는(unarmed) 경찰조직이다.<sup>30)</sup>

**4) 식민초기의 지방자치경찰**

캐나다 경찰의 독특한 측면들 중의 하나는, 그 조직 면에서 3가지 구별되는 경찰조직이 있는 바, 연방(federal), 州단위(provincial) 그리고 지방자치체(municipal) 경찰조직이다. 同시스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캐나다 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1)</sup>

초기의 경찰시스템은 다양하고 여러 형태를 띠었다. 정착지와 정착민들의 기원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그들 자신의 고유한 경찰조직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상부지역, 오늘날 Ontario州 인근에는 영국에서 온 정착민들이 영국경찰과 유사한 법률과 체계를 채용하였으며, 프랑스에서 온 정착민들은 프랑스의 제도를 채용하였다. 초기의 경찰조직에 대하여 책임을 진 者들은 주로 부유한 지주들이었으며, 그들은 치안판사(혹은 시장)로 활동하였으며, 도시의 범죄와 화재예방을 위한 夜警員 제도를 만들었다. New France 경찰규정들이 1673년 초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1759년 영국에 의하여 New France가 정복될 때까지 지속되었다.<sup>32)</sup>

캐나다 최초 경찰관의 등장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1651년 Quebec이라는 주장과 함께 1729년 New Foundland의 St. John이라는 주장이 있다. 초기의 경찰관들은 夜警員으로 활동했다. 1673년경에 들어서면, 영국의 법률과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가 등장하는 바, 그들의 역할은 법집행을 포함할 정도도 확대되었다.

1793년 “The Parish and Town Officer Act”가 제정되면서, 同법령을 통하여 캐나다 상부지역 각 지방에는 고위직 경찰관들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각 教區 혹은 도시에서 무급직 경찰로 근무하였다.

29) Seagrave, 1997, p. 26.

30) Seagrave, 1997, p. 26.

31) Seagrave, 1997, p. 21.

32) Seagrave, 1997, p. 21.

19세기경에 범죄와 범죄자 계층이 심각하게 증가하자, 캐나다에서는 범죄통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었다. 1835년, 토론토에서는 경찰활동에 전종하는 최초의 有給職 경찰이 탄생하였으며,<sup>33)</sup> 1859년경에는 32명, 1890년경에는 거의 100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근무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토론토의 뒤를 따랐으며, Quebec에는 1838년, Hamilton은 1840년, Montreal은 1843년, Ottawa는 1855년에 각각 경찰조직을 탄생시켰다. 1859년경까지, 캐나다의 각 도시들과 도시연합들은 경찰책임자(Chief Constable)를 두고자 하였다. 적어도 자치구역별로 1명은 유급직으로 임명하였다. 초기의 경찰조직들은 자치시 위원회(Municipal Council)의 통제하에 두었다.

1859년 "The Municipal Institutions of Upper Canada Act"을 통하여, 경찰에 대한 책임과 공공의 통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boards and commissions of police)가 창설되었다. 서부지역으로 이민과 이동이 늘어나면서, 보다 더 많은 경찰조직이 생겨났다. 재미있는 것은 Hudson Bay Company 직원들이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종종 경찰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성립되기前, 서부 캐나다지역-Ruperts Land로 알려진-은

Hudson Bay社의 봉건영지나 다름없었으며, 법집행은 同회사가 맡았다.

초기의 지방자치체 경찰들은 유치장관리, 소방관, 징세관, 무단결석 감독관 그리고 집달관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과 임무들을 맡았다. 특히 Griffiths는 당시의 경찰들이 수행하였던 주요한 임무들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민족간, 노동자계층과 사업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 음주·매춘과 관련하여, 청교도적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도덕적 질서 유지,
- 범죄행동과 관련된 者들을 체포하는 일이었다고 한다.<sup>34)</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치체들의 독립성(autonomy)은 도시지역 경찰활동의 근본적인 구조적 특성을 이루었다. 지방정부의 발전, 구조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의하여 증대되었다. 전쟁 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연합도시들은 거대 도시로 합쳐졌으며, 소규모의 경찰관서들이 흡수·병합되었다. 도시들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특히 1963년~1976년 사이에 71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466개로 줄어들었다. 물론 경찰관서들도 합병되었다.<sup>35)</sup>

33) Dantzker/Mitchell, 1998; Seagrave, 1997, p. 22.  
 34) Seagrave, 1997, p. 22.  
 35) Seagrave, 1997, p. 22.

### 3. 치안여건

치안수요 판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간 범죄발생동향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2,664,49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표: 2).<sup>36)</sup> 그리고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할인구의 크기인 경찰밀도는 약 1: 538이며(표: 3), 개별경찰관들의 범죄발생 건수별 직무부담은 1인당 연간 42건 정도에 이른다(표: 4).<sup>37)</sup>

[표 2] 2001년도 범죄발생동향

| 폭력범죄<br>309,101건 | 재산범죄<br>1,257,729건 | 기타형사범<br>841,191건 | 마약범죄<br>91,920건 | 교통(사고)범죄<br>126,298건 | 기타 연방법 위반 |
|------------------|--------------------|-------------------|-----------------|----------------------|-----------|
| 살인 554           | 재물손괴 등 282,512     | 경 범 338,425       | 대마사범 70,624     | 사망사고 284             | 38,257건   |
| 살인미수 721         | 자동차절도 170,213      | 통화위조 37,771       | 코카인사범 12,233    | 부상사고 1,755           |           |
| 폭행 239,163       | 중절도 21,146         | 보석위반 91,249       | 헤로인 965건        | 음주측정거부등 4,856        |           |
| 성폭행 24,419       | 경절도 등 665,961      | 평화교란 88,729       | 기타 약물 8,098     | 위험한 운전 등             |           |
| 기타성범죄 3,026      | 장물죄 등 29,565       | 공격적 무기 17,456     |                 |                      |           |
| 유괴 713           | 사기 88,332          | 매 춘 5103          |                 |                      |           |
| 강도 27,414        |                    | 방 화 14513         |                 |                      |           |
| 기타               |                    | 기 타 247,945       |                 |                      |           |

총 범죄발생건수: 2,664,496건

[표 3] 최근 수년간 경찰력추이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정규경찰관 | 55,954명  | 57,076명 | 58,414명 |
| 일반직   | 19,909명  | 19,998명 | 20,760명 |
| 합 계   | 75,863명  | 77,074명 | 79,174명 |
| 경찰밀도  | 1: 550.3 | 1:545.1 | 1:537.8 |

36)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Canadian Crime Statistics 2001, 2002, p. 11 & p. 45.  
 37)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5.htm>

[표 4] 경찰관 1명당 범죄발생건수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경찰관 1명당 연간 범죄발생건수* | 42.0  | 42.2  | -     |

\* 교통사고건수는 제외된 수치임.

전체 경찰예산은 2001년의 경우, 73억 달러였으며, 전년도(2000년, 69억 달러)에 비하여 6.9% 증가한 수준이었다.<sup>38)</sup> 특히 캐나다 국민 1인당 234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000년에는 1인당 221달러). 경찰과 다른 형사사법기관간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경찰>교정>법원(검찰)순으로 나타났다(표: 5).<sup>39)</sup>

[표 5] 형사사법기관간 예산규모 비교

| 기관, 연도 | 1992~1993년      | 1997~1998년      | 1998~1999년      |
|--------|-----------------|-----------------|-----------------|
| 경찰     | 5,716,833,000달러 | 5,989,000,000달러 | 6,209,800,000달러 |
| 법원     | 867,006,000달러   |                 | 925,000,000달러   |
| 검찰     |                 |                 | 278,000,000달러   |
| 법률원조   | 603,434,000달러   | 454,600,000달러   | 494,000,000달러   |
| 소년교도소  | 487,900,000달러   | 490,200,000달러   | 497,400,000달러   |
| 성인교도소  | 1,894,482,000달러 | 2,077,400,000달러 | 2,257,000,000달러 |

(캐나다 1달러= 832.19원, 2003년 8월 22일 기준)

### III. 캐나다 경찰조직

캐나다 경찰의 관할권과 구조는 연방정부(federal), 州정부(Provincial 혹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체(Municipal) 사이에서 분화·다양해져 있다.<sup>40)</sup>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을 3단계 행정단위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연방수도인 Ottawa에 있는 Solicitor General<sup>41)</sup>(사법장관 혹은 법무장관)은

38)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15.  
 39) in: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3.htm>; Dantzker/Mitchell, 1998, p. 19.  
 40) Seagrave, 1997, p. 31.  
 41) 영국에서는 법무차관 혹은 검찰총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연방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州정부단위에서는 사법행정이 州(혹은 準州) 법무부장관(사법장관 혹은 검찰총장)<sup>42)</sup> 소관이다. 이러한 3단계 경찰시스템은 서로 다른 시민들에게 봉사하면서, 각기 독립적으로 발전되어왔다. 결과적으로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 경찰기관들과는 달리, 특이하다.

#### 1. 연방경찰조직(RCMP)과 활동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는 캐나다국립(연방) 경찰이다. 同RCMP는 연방경찰이면서(National), 州경찰(provincial)이면서 지역경찰(Municipal)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제도보다도 특이하다. 연방경찰은 캐나다에서 다음 3가지 차원에서 경찰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州단위 그리고 연방정부 단위이다. 연방경찰 차원의 서비스를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물론 RCMP와 계약을 맺은 지역과 온타리오州경찰 및 퀘벡州경찰과 계약을 맺은 지역을 포함하여,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은 8개州와 3개 準州에서 연방경찰은 州경찰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sup>43)</sup> 많은 州들이 RCMP와

계약을 맺고, 지역단위의 경찰활동을 맡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201개 자치단체들과 계약을 맺고 경찰력을 제공(파견)하고 있다. 결국 연방경찰은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에서 州경찰과 지방자치체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연방경찰(RCMP)은 연방 사법장관(Solicitor General) 소속의 경찰청장(Commissioner)<sup>44)</sup>의 지휘를 받는다. RCMP Act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책임은 경찰청장에게 속하는 바, 그를 보좌하는 4명의 본부 차장(Deputy Commissioner)과<sup>45)</sup> 4개 연방경찰 권역을 맡고 있는 차장들이 있다.<sup>46)</sup> 그리고 10개주와 3개 준주에 지역본부(Division)가 설치되어 있다.

RCMP는 캐나다를 크게 4분하고 있는 바,

- 대서양지역(Newfoundland와 Labrador,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 중부지역(Quebec, Ontario)
- 북서부지역(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Nunavut, Northwest Territories)
- 태평양지역(British Columbia, Yukon Territory) 등이다.

이와 같은 캐나다 연방경찰의 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

42) Minister of Justice 혹은 Attorney Generals, Solicitor Gener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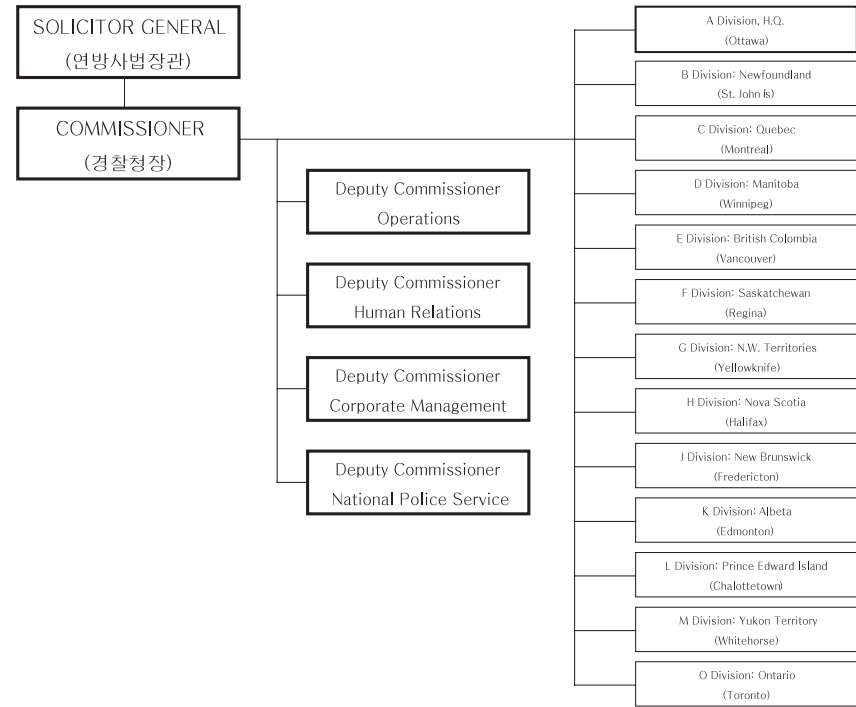
43) Seagrave, 1997, p. 39.

44) 2003년 2월말 현재, 연방경찰청장은 Giuliano Zaccardelli(1947년 10월생), 동인은 1970년 9월에 연방경찰에 입문하였다.

45) Deputy Commissioner National Police Service, Deputy Commissioner Corporate Management and Comptrollership, Deputy Commissioner Strategic Direction, Deputy Commissioner Operations 등이다.

46) Deputy Commissioner Central Region(온타리오주, 퀘벡주 등 관할), Deputy Commissioner Atlantic Region(동부 대서양지역), Deputy Commissioner North West Region(북서부 및 태평양연안)

[그림 2] 캐나다 연방경찰 조직도



연방경찰대학(Canadian Police College)은 재교육 및 전문화 교육을 담당하며, 캠퍼스는 Ottawa市에 소재하며, 연방경찰학교(Training Academy)는 신규경찰관 교육기관으로서 Saskatchewan州 Regina市에 소재하고 있다.

RCMP의 연방경찰 차원의 책무는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이 부여한 권한으로 정해졌다. 연방경찰은 모든 州와 準州에서 마약범죄통제법, 인디언法(the Indian Act), 세금 및 물품세, 이민 및 여권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연방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sup>47)</sup> 캐나다법을 집행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평화·질서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sup>48)</sup>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예방 및 연방범위반에 대한 조사, 계약을 맺은 州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범죄예방, 수사 그리고 법령과 질서의 유지, 요인에 대한 경호 그리고 다른 연방법집행기관에 수사지원 등이다. Ottawa에 있는 연방의회 청사와 같은 연방재산도 보호한다. 연방경찰은 10개 州와 3개의 準州에 관할권이 있다. 단지 Ontario州와 Quebec州(non-contract divisions)에서는

47) in: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48) Seagrave, 1997, p. 35.

지방자치경찰과 州경찰차원의 관할권이 없다.

2002년 6월 15일 현재 캐나다 전체 경찰관의 숫자는 58,414명이며, 이중 연방경찰관은 15,343명, 州경찰(Ontario와<sup>49)</sup> Quebec州) 및 자치체 경찰은 43,071명이다. 따라 연방경찰 對 州?自治경찰의 비율은 1:3정도이다.<sup>50)</sup> 오늘날 가장 큰 규모의 경찰관서들은 다음과 같다.

(표: 6) 캐나다에서 규모가 큰 경찰조직들

| 경찰관서            | 경찰관숫자   | 비 고  |
|-----------------|---------|--|
| 연방경찰(RCMP)      | 15,343명 | 2002년 12월 현재                                   |
| Toronto광역경찰     | 5,155명  | 2001년 12월 현재                                   |
| Ontario州경찰(OPP) | 4,096명  | 2002년 12월 현재, 지방자치경찰에 배속된 1,206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 |
| Quebec州경찰(QPP)  | 4,523명  | 2002년 12월 현재                                   |
| Montreal도시지역경찰  | 4,082명  | 2001년 12월 현재                                   |
| Vancouver市경찰    | 1,126명  | 2003년 1월 현재                                    |

## 2. 州경찰조직과 활동

캐나다에 3개의 州경찰조직이 있다. 즉 Ontario Provincial Police, Quebec Provincial Police 그리고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RNC)이다.

New Foundland에는 2개의 경찰조직이 있는 바, RNC는 州경찰이다. 同州경찰은 규모가 큰 3개의 지방자치단체(St. John 's, Corner Brook, Labrador City)에 경찰력을 제공하고 있다.<sup>51)</sup> New Foundland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연방경찰(RCMP)과 계약을 맺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경찰력을 파견하고 있다.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와 Manitoba를 제외한 대부분의 州들이 1970년대에 경찰법을 제정하고, 州단위와 지방자치 단위에서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州마다 상이한 바,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 유니폼의 통일, 경찰위원회의 창설 그리고 경찰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49) Ontario州경찰(OPP)은 지방자치단체(Municipal)와 계약을 맺고, 1261명의 州경찰관을 지방자치체 경찰로 파견 근무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체 경찰관 숫자에 포함되었다.

50)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51) Seagrave, 1997, p. 37. 그리고 New Foundland 州경찰활동은 RCMP가 맡고 있다.

### 3. 지방자치 경찰조직과 활동(municipal policing)

대부분 州의 경우, 입법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관할인구에 도달한 市나 郡지역에서 그들 자신의 경찰조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찰활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3가지 형태 중의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경찰조직을 창설하던가(가장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경찰), 州경찰(provincial police service) 혹은 연방경찰(RCMP)과 계약을 맺고 경찰력을 제공받는 경우,<sup>52)</sup> 아니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지역경찰조직(regional police force)을 공유하기 위하여 협정을 맺든 가 선택해야 한다.<sup>53)</sup> 많은 수의 자치체들이 그들 자신의 경찰조직을 창설하기보다는 州경찰·연방경찰과 계약을 맺고 있는 바, Ontario州와 Quebec州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州에서는 州경찰로서 RCMP가 계약을 맺고 자치체 경찰조직에 경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체와 RCMP간의 계약은 연방경찰(RCMP)이 州경찰 역할을 하도록 계약을 맺은 州에서만 이루어진다. 州에 파견된 연방경찰은 자치체 경찰파견대로서 관할구역을 공유하고 있다.

[표 7] 각주별 연방, 州경찰 및 지방자치경찰 분포

|                            | 독립적(Non-RCMP) |          | 연방경찰(과 계약)RCMP |          |         |       |
|----------------------------|---------------|----------|----------------|----------|---------|-------|
|                            | Municipal     | Province | Municipal      | Province | Federal | Other |
| Newfoundland and Labrador  | .....         | 307명     | ....           | 377명     | 70명     | 25명   |
| Prince Edward Island       | 85            | ....     | 6              | 89       | 23      | 11    |
| Nova Scotia                | 726           | ....     | 53             | 635      | 144     | 34    |
| New Brunswick              | 447           | ....     | 190            | 514      | 129     | 26    |
| Quebec                     | 8,943         | 4,523    | ....           | ....     | 938     | 24    |
| Ontario                    | 16,899        | 4,096    | ....           | ....     | 1,534   | 98    |
| Manitoba                   | 1,299         | .....    | 178            | 555      | 160     | 27    |
| Saskatchewan               | 820           | ....     | 207            | 744      | 208     | 29    |
| Alberta                    | 2,842         | .....    | 714            | 983      | 302     | 43    |
| British Columbia           | 2,084         | .....    | 2,685          | 1,389    | 684     | 116   |
| Yukon Territory            | ....          | ....     | ....           | 85       | 30      | 11    |
| Northwest Territories      | ....          | ....     | ....           | 136      | 17      | 7     |
| Nunavut                    | ....          | ....     | ....           | 96       | 6       | 9     |
| RCMP“HQ”& Training Academy |               |          |                |          | 441     | 561   |
| 합 계                        | 34,145        | 8,926    | 4,033          | 5,603    | 4,686   | 1,021 |

52)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1997, p. 17.

53) Seagrave, 1997, p. 32.

#### 1)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은 지방자치경찰

2001년 현재, 캐나다에는 603개의 자치체 경찰조직이 있는 바, 그 중에서 201개 자치단체는 연방경찰과, 85개는 Ontario州 경찰과 계약을 맺은 경우(contract divisions)이다 (표: 7참조). 연방경찰은 Newfoundland & Labrador, Quebec과 Ontario州(州경찰은 州內 85개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1,215명의 경찰관을 파견하고 있음)를 제외하고, 계약을 맺은 201개 지방자치단체에 4,036명의 연방경찰관들을 파견한 바 있다.<sup>54)</sup> 전체 계약 수주액의 70% 정도는 관할인구 15,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이다.<sup>55)</sup>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관들은 전체 경찰관수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자치경찰, 주경찰, 연방경찰)들은 전체 캐나다 경찰의 67%를 차지하며, 이들의 예산은 전체 경찰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sup>56)</sup> 州경찰은 전체 경찰예산의 23%, 연방경찰은 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州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치체 경찰”을 두지 않고 있으며,<sup>57)</sup> 州경찰(The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州경찰임) 307명과 연방경찰 472명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Yukon(126명), Northwest Territories(160명), Nunavut(111명)에는 지방자치체 경찰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곳은 모두 연방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연방경찰(RCMP) 파견대(Detachment)와 계약을 맺은 경찰관서는, 경찰관서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계급의 경찰간부에 의하여 지휘를 받는다. 규모가 작은 연방경찰 파견대의 경우, 종종 몇 명 정도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조직도 있다. 이들은 형법, 州법령 그리고 자치법령 뿐만 아니라 마약통제법(Narcotics Control Act)과 같은 연방법을 집행하기도 한다.

#### 2)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가진 자치경찰

60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17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non-contract)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표: 7참조).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32,727명의 경찰관을 자치단체 스스로 채용하고 있다.<sup>58)</sup> 자치체 경찰들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큰 규모의 자치체 경찰은 Toronto광역경찰

54)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2002, p. 17.

55)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56)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2002, p. 17.

57) New Foundland does not have any municipal police forces. 同旨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58)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21.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관들은 전체 경찰관수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155명)과 Montreal광역경찰(4,082명)을 들 수 있다. 독립적인 자치체 경찰들은 주로 Chief Constable이 지휘한다. 경찰관 500명 이상씩 배치된 대규모 지방자치 경찰관서들은 다음과 같다.<sup>59)</sup>

[표 8] 대규모 지방자치경찰관서들

|                          | 관할인구(2001년기준) | 경찰관수(2002년 기준) |
|--------------------------|---------------|----------------|
| Toronto Police           | 2,562,235명    | 5,048명         |
| Montreal                 | 1,838,474     | 4,109          |
| Peel Regional Police     | 999,146       | 1,384          |
| Calgary Police           | 899,285       | 1,402          |
| Ottawa-Carleton Reg.Pol. | 800,525       | 1,055          |
| York Regional Police     | 778,000       | 929            |
| Winnipeg Police          | 631,675       | 1,173          |
| Edmonton Police          | 663,819       | 1,142          |
| Vancouver Police         | 573,154       | 1,126          |
| Durham Regional Police   | 523,013       | 757            |
| Quebec Police            | 513,981       | 718            |
| Hamilton Regional Police | 503,043       | 718            |
| Waterloo Regional Police | 456,767       | 591            |
| Niagara Regional Police  | 426,912       | 623            |
| Halton Regional Police   | 387,388       | 489            |

3) 경찰조직의 광역화 경향

1960년대 캐나다 동부지역의 많은 소규모 경찰관서들이 보다 더 큰 경찰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합병되었다. 이러한 경찰관서의 광역화 체제는 Ontario와 Quebec州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62년에서 1977년까지 150개의 자치체 경찰들이 10개의 광역화 경찰조직으로 합병되었다. 오늘날 Ontario州 주민들의 50% 이상이 광역화 경찰조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Quebec州에서는 이러한 광역경찰조직이 Montreal과 인접한 지역들-Montreal Urban Community Police-에 대하여 경찰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Winnipeg경찰의 경우, 13개 자치체 경찰을 통합한 바 있다.

59)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13에서 재구성.

이러한 광역화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sup>60)</sup>

- 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위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르면, 여러 개의 소규모 지방자치 경찰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경찰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② 소규모의 많은 경찰조직들이 1곳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때 야기되는 경찰활동상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 ③ 이러한 경향은 보다 더 평등한 사법행정과 공정한 경찰서비스 제공을 촉진시킨다. 상이한 경찰조직들은 종종 경찰정책들, 도움요청에 대한 응답관행들, 법집행,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다양화한다. 경찰조직의 광역화 경향은 평등한 경찰서비스 제공을 담보한다.
- ④ 인접한 관할권내에서 범집행 공무원들간의 협력을 증대시킨다. 범죄자들은 경찰관할권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웃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sup>61)</sup>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작은 경찰관서들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독립적인 경찰기관들간에 협력과 정보교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광역화 경찰조직은 경찰서비스의 협력과 조정을 개선시킨다.
- ⑤ 소규모 경찰관서들이 독자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전문적 경찰활동 영역, 즉

비상대응팀, 법의학적 감정시설 그리고 전문화된 수사와 같은 역량을 증대시킨다.<sup>62)</sup>

- ⑥ 인사행정의 발전을 가져온다. 광역화를 지지하는 견해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근무경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와 보너스 그리고 근무조건들에 있어서 동일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많은 정치인들과 경찰관계자들이 이러한 광역화 경향을 지지하고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면, 경찰서비스에 통제 상실, 지방자치 경찰의 정체성 상실, 오늘날 지역주민들과 경찰이 보다 더 친근한 관계유지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철학과 발전에 대한 중대한 손상 등의 측면과 경찰직무의 재배정·직장상실·다른 보수 수준과 근무조건·다른 지휘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한다.<sup>63)</sup> 이러한 경찰조직의 광역화 경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화·현대화과정에서 非도시지역 자치체 경찰들은 卍단위 경찰을 중심으로 통합시키고, 연방경찰(RCMP)은 연방법을 독점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sup>64)</sup>

60) Seagrave, 1997, p. 33.

61)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Vancouver City Police의 경우, 시내 중심부만을 관할하는 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밴쿠버시와 인접한 다른 도시(Burnaby, Coquitlam, Richmond, New Westminster, Delta, Surrey, North- & Westvancouver) 거주자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시내중심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 분 내에 다른 경찰관할로 도주하게 되면, 경찰관할권이 상이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치안유지비용은 고스란히 밴쿠버시민들이 혼자서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범죄대책을 위해서는 밴쿠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찰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市長을 비롯한 지방정치인들이 경찰력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한다.

62) 밴쿠버시에 인접한 작은 규모의 경찰관서들의 경우, 경찰관 숫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가 허다한 바, 이들 관서에서 전문적인 수사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63) Seagrave, 1997, p. 34.

#### 4) “계약 경찰제도”의 문제점

캐나다 전역에 700여 개의 연방경찰 파견대가 있으며, 보직 및 인사이동(transfer)에 관하여, 연방경찰관들은 연방경찰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일반 연방경찰관들은 캐나다 어떤 지역에도 근무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sup>64)</sup>

경찰조직은 재정적·법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경찰정책의 목적과 목표들에 관하여, 그들의 활동과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책임은 자신의 조직적 구조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단위 혹은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내에 있어야 한다. 비록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고 경찰력을 제공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방경찰 파견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accountability)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중인 RCMP는 법적으로(legally) 연방사법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13개주 파견대장과 해당경찰관서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연방경찰과 주경찰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주(법무)장관과의 관계는 단지 행정적인 것이다. 연방경찰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 갖고 있는 관계는 그 어떤 법적 책임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의 해당장관이

경찰활동에 대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방 경찰에 소속된 지역 경찰관서장이 연방경찰 조직·구조를 통하여 연방사법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었을 때,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책임과 통제에 대한 한계와 경계선이 일반인들에게는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RCMP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찰작용상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가 주경찰과 지방자치체 경찰관들이 주가 아닌, Ottawa 본부에 우선적으로 충성하는 주경찰과 지방자치체 경찰을 갖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관의 소속과 경찰 활동 대상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연방경찰과의 “계약에 의한 경찰력 파견 제도”는 소위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전략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British Columbia 주경찰위원회에서는 RCMP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보다 더 지역차원의 요구에 책임을 갖도록 해야된다고 한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sup>65)</sup>

64) Seagrave, 1997, p. 35.  
65) in: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66) Seagrave, 1997, p. 40.

#### 5. 경찰위원회제도

지방자치경찰에서는 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론토광역경찰청, 오타와경찰청, 밴쿠버경찰청에서는 Police Services Board를 설치하고 있다.<sup>67)</sup> 특히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지방경찰조직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제화(경찰법 5장 23조 1항)하고 있는 바, 시의회에서 1명을 지명하고(市長은 자동적으로 의장으로 임명된다), 나머지 5명은 주정부에서 지명하고 있다.<sup>68)</sup> 밴쿠버경찰청의 경찰위원회를 상설하면, 위원장 1인(밴쿠버시장), 위원 6명(변호사 2명, 여성사업가 1명, 전문경영인 1명, 지역협의회장 1명,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위원회(Municipal Police Board)는 지역경찰관서를 창설하고,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내용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다. 경찰위원회는 시의회(Municipal Councils) 및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로부터 독립적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경찰위원회에서는 시의회의 정치적 사안에 관계된 당원들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시정부나 주정부는 지방자치 경찰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이해만을 갖는다. British Columbia 주 경찰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정규경찰관 및 경찰관서에 근무할 일반직원의 고용
- ② 정책 및 지시하달
- ③ 재정집행에 대한 감시
- ④ 정책과 경찰서비스에 대한 민원처리 등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 입법사항은 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경찰법
- ② Freedom Information and Privacy Act
- ③ 고용기준법
- ④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 ⑤ Criminal Code of Canada, R.S.C., C.C.-46
- ⑥ Key Municipal Bylaws
- ⑦ Collective Agreements 등이다.

#### 6. 경찰과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

경찰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중요한(Stakeholder)역할을 한다. 경찰에 배정되는 예산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67) Dantzker/Mitchell, 1998, pp.101-103.  
68) 주정부에서는 사전에 주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는다. 시의회,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인구나 사회적 구성원들의 비율을 고려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을 추천하여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British Columbia주 경찰법).

재량행사를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 기관 구성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보통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련성(affinity)을 맺고 있지만, 법원 쪽으로는 범위가 좁다.<sup>69)</sup>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起訴와 刑罰宣告에 딱 들어맞는 정보의 대부분을 수집하는 기관을 대표한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역할과는 다르게, 시민들(public)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자주 접촉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공동체에서 법과 질서를 대표한다.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교정기관 대표자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해야한다.<sup>70)</sup>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 검찰 혹은 기소관: prosecutor)는 미국의 검찰과는 달리, 수사기능을 갖지 않는 법원의 공무원이다.<sup>71)</sup> 캐나다에서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다. 수사결과가 검찰청에 소송서류로 간략히 제출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소행위는 수사의 완전성, 공정성 그리고 효과성에 달려 있다.

경찰과 왕립기소관은 긍정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의존적인 관계(mutual dependency)를 맺고 있다. 수사과정 중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이 왕립기소관으로부터 자문(advice)을 구하게 되는 것은

특히 복잡한 사건 수사인 경우이다.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그 수사결과를 놓고 왕립기소관에게 起訴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지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게 된다. 이러한 실무관행들은 성공적인 법집행을 정당하게 추구함에 있어서는 가치롭다. 그러나 경찰은 왕립기소관이 경찰과 형성된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왕립기소관이 경찰을 위해서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왕립기소관이 경찰의 요구사항에 민감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경찰에게는 왕립기소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왕립기소관의 역할은 범죄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有罪의 심증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왕립기소관은 피고인의 권리들이 재판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존중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내는 입장이었던 것처럼, 왕립기소관들은 완전히 밝혀낸다는(full disclosure) 개념에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경찰과 왕립기소관들은 보통 兩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밀접한 共生관계에서 일한다. 그들의 관련 역할 혹은 시스템 내에 있는 다른 관여자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잠재성은 항상 존재한다.

69) Dantzker/Mitchell, 1998, p. 28.

70) Dantzker/Mitchell, 1998, p. 29.

71) Dantzker/Mitchell, 1998, p. 29. The Crown Attorney is an officer of the court who, unlike his American counterpart, does not have an investigative function.

특히 변호인은 왕립기소관이 경찰에 의하여 혹은 경찰입장에 의해서 흡수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起訴는 거의 항상 他관할 왕립기소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간의 견전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은 그들의 관련 역할에 대한 완전성을 훼손함이 없이, 그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sup>72)</sup> 검찰청과 경찰간에 일정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기소관이 주장하곤 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중요한 사건들을 예외로 하고, 이 것은 거의 진실이 아니다. 대체로, 경찰과 기소관이 의사소통을 하는 유일한 시간은 경찰이 사건수사를 종료(혹은 경찰관이 종료했다고 믿을 때)한 이후 그리고 기소책임 맡은 기소관에게 서류를 제출한 이후이다. 혹은 경찰관이 청문이나 공판에서 선서 일정이 잡혀있을 때이다.

만약에 그 사건수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혹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때에는 기소관과 경찰간에 의사소통이 있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종종 만족스러운 대화가 아니다. 기소관은 경찰의 수사 혹은 법정에서 필요하게 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찰은, 기소관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실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용의자가 범죄현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건들- 즉 “총에서 연기가 막 나는”-과 유죄의 심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본질적이고 보충적인 증거들(목격자, 물리적 증거)들이 있는 사건들만을 기소하려 한다고 불평을 한다. 상대방에 대한 兩당사자들의 비판은 유용해 보이기도 한다.<sup>73)</sup>

## IV. 캐나다경찰의 인사관리

### 1. 경찰관 계급별 인원비율

#### 1) 연방경찰

2001년 5월 1일 현재 연방경찰의 계급별 경찰관 비율에 따르면, 순경-경사급 비율이 자그마치 92.1%에 달하고 있다.<sup>74)</sup> 한국 경찰과는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연방경찰의 경우, 유사시 군대조직에 편성되는 등 지방자치 경찰조직보다는 準군대적(paramilitary)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한다.

72) Dantzker/Mitchell, 1998, p. 29.

73) Dantzker/Mitchell, 1998, p. 31.

74) in: <http://www.rcmp-grc.gc.ca/html/organiz.htm#Organization>(2001년 5월 현재).

[표 9] 연방경찰의 계급별 경찰관수 및 비율

| 보직명칭             | 계급명칭                   | 한국과 비교         | 계급간비율         |
|------------------|------------------------|----------------|---------------|
| 연방경찰청장           | Commissioner           | 1명(차관급)        |               |
| 연방경찰청 차장         | Deputy Commissioner    | 7명(치안감급)       |               |
| 연방경찰청 부장         | Assistant Commissioner | 23명(경무관급)      |               |
| 경찰서장             | Chief Superintendents  | 52명(총경급)       |               |
|                  | Superintendents        | 122명(경정급)      | 0.7%          |
|                  | Inspectors             | 300명(경감급)      | 1.9%          |
|                  | Corps Sergeant Major   | 1명             |               |
|                  | Staff Sergeants        | 692명(경위급)      | 4.5%          |
|                  | Sergeants              | 1,532명(경사급)    | 10.0%         |
|                  | Corporals              | 2,711명(경장급)    | 17.8%         |
|                  | Constables             | 9,816명(순경급)    | 64.3%         |
| <b>경찰관총원</b>     |                        | <b>15,257명</b> | <b>100.0%</b> |
| 일반직 공무원          | Civilian Members       | 2,321명         |               |
|                  | Public Servants        | 3,632명         |               |
| <b>경찰관서 인원합계</b> |                        | <b>21,201명</b> |               |

2) 밴쿠버경찰청(지방자치경찰)사례

경찰관의 계급은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경찰관서의 규모에 따라 5-9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sup>75)</sup> 밴쿠버경찰청의 계급별 경찰관 비율에 의하면, 대체로 순경-경장급이 85.5%, 순경-경위급까지는 약 96.5% 정도이다(표: 10).

75) Vancouver경찰청의 경우, Chief of Police, Deputy Chief of Police, Inspector, Sergeant, Constable 등 5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Toronto경찰청의 경우, Chief of Police, Deputy Chief of Police, Staff Superintendent, Superintendent, Inspector, Staff Inspector, Staff Sergeant, Sergeant, Constable 등 9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전형적인 경우는 7가지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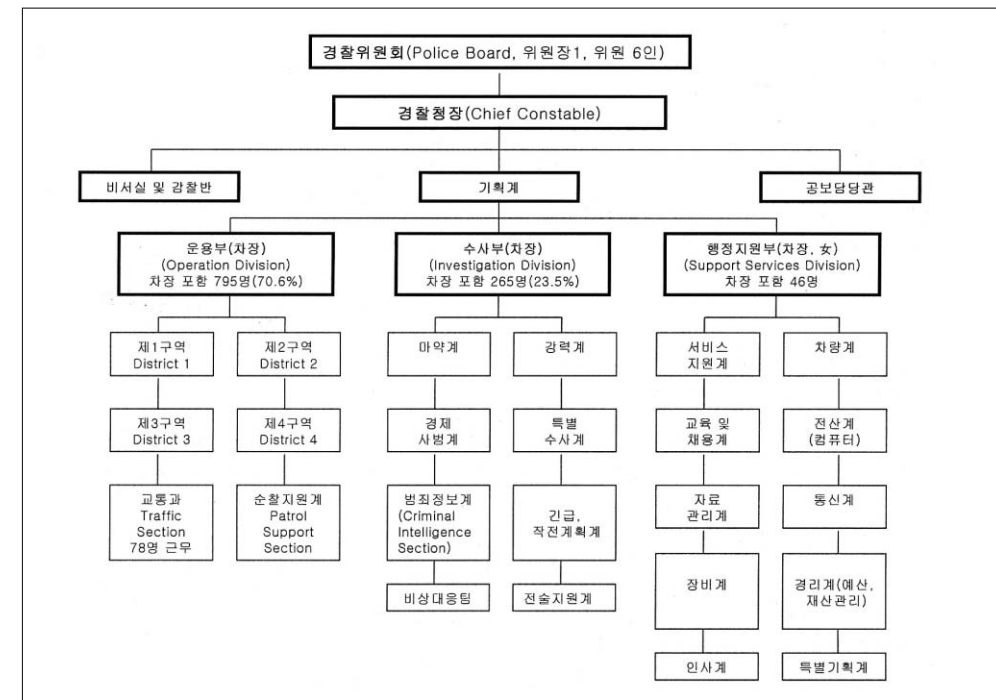
|                |              |
|----------------|--------------|
| Chief          | 고급간부(경정-총경급) |
| Deputy Chief   |              |
| Superintendent |              |
| Inspector      | 중급간부직(경사-경감) |
| Staff Sergeant |              |
| Sergeant       |              |
| Constable      |              |

[표: 10] 밴쿠버경찰청의 계급별 경찰관수 및 비율

| 보직명칭      | 계급명칭                   | 한국과 비교        | 계급간비율 |
|-----------|------------------------|---------------|-------|
| 경찰청장      | Chief Constable        | 1(경무관급)       |       |
| 차장        | Deputy Chief Constable | 3(총경급)        |       |
| 계장급       | Inspectors             | 35(경감, 경정급)   | 3.1%  |
| 반장 및 팀장   | Sergeant               | 124(경위, 경사급)  | 11.0% |
| 순경, 경장급   | Constable              | 963(순경, 경장급)  | 85.5% |
| <b>합계</b> |                        | <b>1,126명</b> |       |

그리고 일반경찰관서의 부서별 경찰관 배치비율과 관련, 밴쿠버경찰청(1,126명)의 사례를 보면, 방범경찰은 795명(70.6%), 수사경찰265명(23.5%) 그리고 행정지원부서는 46명(4%) 기타 1.1%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경찰의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밴쿠버경찰청 조직 및 부서별 경찰관배치 비율



\*청장포함 비서실 등 Staff 20명 근무

한편, 순찰부서 근무방식은 4교대제 방식이다(8일 동안 44시간근무). 즉 4일 동안 근무하고 4일간 연속 휴무하는 시스템이다. 지구경찰서별(District 1,2,3,4)로 10개 순찰팀이 통상 1일 5가지(A, B, C, D, E) 근무유형에 따라 근무교대하고 있다. 교대제 순찰근무유형은 다음과 같다.

- A(Day)형 근무자들(Day)은 常設 晝間근무팀(05:00-16:00간 11시간).<sup>76)</sup>
- B(Bravo)형 07:00-18:00,
- C(Cruise)형 14:00-01:00,
- D(Delta)형 16:00-03:00,
- E(Echo)형 19:00-06:00까지이다.

예를 들면, 제 2지구경찰서(District 2) 순찰 3팀 소속의 “Smith”라는 경찰관은 첫째 4일간 B형 근무(07:00-18:00)를 마치고, 4일간 비번을 취하고, 둘째 4일간 C형, 4일간 비번, 셋째 4일간 D형, 4일간 비번, 넷째 4일간 E형, 4일간 비번이다(표: 12). 32일을 주기로 근무형태를 교대한다.

(그림: 4) 밴쿠버경찰청 순찰경찰관(Smith) 교대근무방식

|                        |  |
|------------------------|--|
|                        | 05-----07-----14-----16-----18---19-----01-----03-----06 |
| 첫째 4일(B형근무),<br>4일간 비번 | .....  |
| 둘째 4일(C형근무),<br>4일간 비번 | .....  |
| 셋째 4일(D형근무),<br>4일간 비번 | .....  |
| 넷째 4일(E형근무),<br>4일간 비번 | .....  |
| *상설 A형(晝間)근무           | .....  |

## 2. 캐나다의 여성경찰비율

여성경찰관(8,911명)의 비율은 썬다 상이한 바, 10.7%(Nova Scotia)- 18.9% (British Columbia)에 이르며, 캐나다 전체 평균은 15.3% 정도 된다.<sup>77)</sup> 여성경찰관비율은 해마다

76) 이들은 매일 晝間에만 근무, 연령층이 높고, 치안수요가 적은 관계로 근무인력도 다른 팀에 비하여 적다.

77)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p. 14.

증가추세에 있다(표: 13).<sup>78)</sup>

(표: 11) 캐나다 여성경찰관 비율의 증가추세

| 연 도   | 남자경찰   | 여성경찰  | 여성경찰비율 |
|-------|--------|-------|--------|
| 1965년 | 29,956 | 190   | 0.6%   |
| 1970년 | 37,763 | 186   | 0.5%   |
| 1975년 | 47,051 | 562   | 1.2%   |
| 1980년 | 48,049 | 1,092 | 2.2%   |
| 1985년 | 48,518 | 1,833 | 3.6%   |
| 1990년 | 52,461 | 3,573 | 6.4%   |
| 1993년 | 52,340 | 4,561 | 8.1%   |
| 1994년 | 50,809 | 5,056 | 9.0%   |
| 1995년 | 49,630 | 5,378 | 9.8%   |
| 2000년 | 48,304 | 7,650 | 13.7%  |
| 2001년 | 48,803 | 8,273 | 14.5%  |
| 2002년 | 49,503 | 8,911 | 15.3%  |

## 3. 경찰관 선발 및 신규교육

### 1) 경찰관 선발 요건 및 절차

훌륭한 경찰관은 상식을 갖고, 성숙하게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sup>79)</sup> 전통적인 선발기준은 신체적인 요소들, 즉 신장, 체중, 연령 그리고 직업에 대한 비전 등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기초필기시험(독해, 문법 및 작문실력 등)<sup>80)</sup>

포함하여, 구두시험(면접), 거짓말탐지기(Polygraph) Test, 특별한 전문영역 테스트, 인지능력 테스트, 심리테스트, 배경조사(범죄경력 포함), 신체적 민첩성, 의학적 검사(시력, 청력 등),

78) Dantzker/Mitchell, Understanding Today's Police(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Scarborough, Ontario, 1998), p.172.

79) Dantzker/Mitchell, 1998, p. 163. G. M. Pugh, The good police officer: Qualities, roles and concepts, i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4, 1986, pp. 1-5.

80) 밴쿠버경찰청의 경우, 필기시험은 2시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者로서의 기본적인 영문법, 철자, 작문실력, 내용이해 및 수학시험이다. 그리고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경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배경조사 등이 포함되고 있다.<sup>81)</sup> 운전면허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연방경찰과 밴쿠버경찰). 한국과는 달리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론 교과목을 테스트하지 않는다.

교육경력(지원자의 학력수준)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Quebec州 전문대학 이상, Community College의 학력조건)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등학교졸업(12년 교육 수료) 이상인 者를 지원요건으로 한다.<sup>82)</sup>

그런데 실제로 연방경찰에 충원되는 경찰관의 60-70%는 대학졸업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3)</sup> 지원자들 중에는 사회학이나 범죄학 전공 자들이 많으며, 다수의 지원자들은 법학을 전공하거나 혹은 대학원 졸업자들도 많다고 한다.

지원연령은 최저 연령은 18-21세, 최고 연령은 35-65세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州 경찰의 경우 18-65세까지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다.<sup>84)</sup> 밴쿠버경찰청의 경우, 19세 이상이며,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방경찰의 경우도 동일하다.

체격조건(신장, 몸무게, 시력)은 대체로 최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이나 여성의 경우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sup>85)</sup> 체력검정은 이른 바, Police Officer's Physical Abilities Test (POPAT)의 경우 4분 15초 이내, 2.4km장거리 달리기를 12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스템은 Justice Institute of British Columbia에서 체력, 건강 그리고 신체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고안, 표준화시킨 제도이다. 2.4km달리기를 비롯하여, 일정한 코스 안에 장애물과 측정도구를 배치해놓고 밀고, 당기기, 끌어올리기, 장애물 뛰어넘기, 구부러져 땅에 누워있는 물체 바로 세우기, 45.5kg짜리 사람모형을 가슴까지 끌어 안기,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州에 따라서는 100m달리기, 1분 이내에 팔 굽혀 펴기·앉았다 일어서기 최저횟수, 36kg짜리 사람모형 15m 나르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채택되어 있다.

2) 순경급 기본교육기간

연방경찰(RCMP)의 순경급 신규 교육 과정은 22주(weeks)이다. 동기간 수료 후에 경찰관으로 임명을 받고, 6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 한편, Ontario州의 순경급 기본교육은 17주이며, 시보기간은 12개월이며, 州경찰(OPP)로서, 지방자치경찰에 배속되어 근무한다. 한편 British Columbia州 경찰

81) Dantzker/Mitchell, 1998, p. 163.  
 82) Seagrave, 1997, p. 75. 그리고 밴쿠버 경찰청의 경우, 대학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者, 온타리오주 경찰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者를 지원요건으로 한다.  
 83) Dantzker/Mitchell, Understanding Today's Police(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Scarborough Ontario, 1998), p. 163.  
 84) in: <http://www.gov.on.ca/opp/recruit/english/oppbound.htm>  
 85) Seagrave, 1997, p. 75.

학교에서는 밴쿠버市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동순경급 기본교육과정은 9개월 정도(35주)이다. 試補기간은 12-18개월 간이다. 캐나다에서 제일 장기간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3) 신규경찰관 교육프로그램

(1) 연방경찰사례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문서작성, 응급처치, 피의자호송, 무전기사용, 경찰견관리, 범죄수사분야(현장보존, 범죄수사 실험실 운용, 지문채취, 사진촬영기법, 화재 현장 수사 등), 호신술, 경찰역사 법률분야(형법 및 연방법규), 추적운전기법, 사격술 및 총기류 조작, 체력단련, 수영, 인간관계, 문화적 다양성, 인간행동과 경찰개입 등에 관한 내용이다(표: 12참조).<sup>86)</sup>

【표: 12】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내용

| 주요 교육분야                                 | 세 부 내 용  |
|---|--|
| Operational Training                    | Practical training, Report writing, First Aid, Handling of Prisoners, Telecommunications, 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er, Typing, Police service dogs, Contingency planning, officer survival      |
| Identification services                 | Bombs and infernal devices, Crime Scene protection, Crime detection laboratories, Plan drawing, Fingerprinting, Photography, Personal descriptions, Identification services, Fire scene investigations |
| Self-defence                            |  |
| Foot drill                              |  |
| History of Police and RCMP              | Police idea, Tradition   |
| Law                                     | Criminal Code, Contacts and informants, Federal statutes, Official directives  |
| Driver Training                         | Driving, Traffic lectures, Point duty, Collision investigations  |
| Firearms                                | Firearms practice, Care and handling of weapons, Shooting decisions, Safety lectures, Gas training   |
| Physical training                       | Physical training, Personal performance test, Fitness field day test, Challenge Circuits, PT lectures, Organized sports, Fitness and nutrition, lifestyle development                                  |
| Swimming                                | Swimming and lifesaving technique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
| Human relations                         | Police function, Effective presentations   |
| Cross cultural                          | Cultural awareness, Cultures in conflict, Development and discrimination, Multiculturalism, Policing of minority groups  |
| Human behaviour and Police intervention | Human interactions/relations, Problem solving, Intervention and defusion, The Interview situation, Theory of stress  |

86) Seagrave, 1997, p. 81.

(2)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 사례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Police Academy)에서는 州內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지 않은 11개 지방자치경찰관서의 경찰관 신규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35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교육과정(Block I) 11week, Police Academy에서 이론교육
- 2단계 교육과정(Block II) 관서실습과정(해당경찰관서, 수사, 순찰, 교통부서)
- 3단계 교육과정(Block III) 13-17week(Police Academy) 이론 심화교육을 통하여 자질을 인증받고(Qualified)
- 4단계 試補기간(12-18개월)을 종료한 後에 정식경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는다(Certified).

주요 교육분야는 법률(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연방법규)분야 15.6%, 범죄수사 및 순찰기법분야 16.6%, 의사소통기법, 피의자체포관련 내용, 추적운전연습, 도로교통법규 및 사고조사요령, 사격술 및 화기류조작, 체력단련 등이다. 구체적인 수업량과 교과목 등은 (표: 13)에 소개되어 있다.

【표: 13】 British Columbia州 순경급 기본교육내용

| 교육 분야                  | 1단계기초이론 (Block I) | 2단계 관서실습 | 3단계 심화교육 (Block III) |
|------------------------|-------------------|----------|----------------------|
| Legal Studies          | 71시간              |          | 52시간                 |
| Investigation & Patrol | 57시간              |          | 75시간                 |
| Communication Skills   | 48시간              |          | 62시간                 |
| Arrest & Control       | 42시간              |          | 29시간                 |
| Driver Training        | 47시간              |          | 21시간                 |
| Firearms               | 42시간              |          | 28시간                 |
| Fitness & Drill        | 34시간              |          | 42시간                 |
| Traffic Studies        | 37시간              |          | 34시간                 |
| 행정, 시험 등               | 21시간              |          | 38시간                 |
| 합 계                    | 411시간             |          | 381시간                |

V. 결 론

캐나다는 대표적인 영미법계국가로서, 영국경찰의 전통을 강하게 받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 근대경찰은 영국의 Robert Peel경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1829년 경찰개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지방분권화된 경찰제도이면서,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州들이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고, 州경찰 및 지방자치 경찰사무를 위탁한 형태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자치단체들은 이른 바, “계약을 맺고 연방경찰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 그리고 경찰 활동의 제공 대상인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캐나다경찰의 독특성을 보이게 된 이면에는 광활한 국토의 크기도 한 몫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대도시에 밀집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은 치안수요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토착민들과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동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은 경찰 서비스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경찰의 역사는 19세기 북서부 기마경찰시절(NWMP: North West Mounted Police)에서 20세기 초반 왕립 캐나다기마경찰(RCMP)로 정착,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 역사는 영국에서 발전된 경찰 시스템을 채용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제도를 발전시켰다. 캐나다 연방경찰인 RCMP의

기원은 1845년의 법령을 통하여 경찰조직이 형성되었다. 후일 이러한 조직은 NWMP의 모델을 만들었다.

1920년 연방정부는 RNWMP의 명칭을 RCMP로 바꿨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과는 계약을 맺고(under contract), 자치경찰력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할권을 확대 해나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첫 번째 계약은 1935년 Manitoba州의 Flin Flon이라는 도시와의 계약이었다. 오늘날 RCMP는 201개의 자치단체들과 10개 州와 3개의 準州에 대해 경찰력을 제공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연방경찰은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에서 州경찰과 지방자치체 경찰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독자적인 州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주는 온타리오州와 퀘벡州를 들 수 있다. 퀘벡州경찰은 “Surete de Quebec: Quebec Provincial Police”은 1870년에 창설된 캐나다 최초의 州경찰인 셈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치체들의 독립성, 지방정부의 발전, 구조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의하여 증대 되었다. 전쟁 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연합 도시들은 거대 도시로 합쳐졌으며, 소규모의 경찰관서들이 흡수·병합되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2,664,49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경찰밀도는 약 1: 538에 달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연방 및 지방자치, 州경찰은 모두 58,414명에 달한다. 전체 경찰 예산은 2001년의 경우, 73억 달러였다.

캐나다 경찰의 관할권과 구조는 연방 정부, 州 정부(Provincial 혹은 準州) 그리고 지방자치체(Municipal) 사이에서 분화되어있다. 연방의 Solicitor General은 연방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RCMP는 캐나다 국립(연방) 경찰이다. 同RCMP는 연방경찰이면서(National), 州경찰이면서 지역경찰(Municipal)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 경찰제도보다 특이하다.

연방경찰의 책무는 연방경찰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정해졌다. 연방경찰은 모든 州와 準州에서 마약범죄통제법, 인디언法 세금 및 물품세, 이민 및 여권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연방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캐나다에 3개의 州경찰조직이 있다. 즉 Ontario Provincial Police, Quebec Provincial Police 그리고 Royal Newfoundland Constabulary(RNC)이다. 대부분 州의 경우, 입법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관할인구에도달한 市나 郡지역에서 그들 자신의 경찰조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경찰활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3가지 형태(고유한 의미의 자치경찰, 계약경찰 혹은 지역경찰공유) 중의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수의 자치체들이 그들 자신의 경찰조직을 창설하기보다는 州경찰·연방경찰과 계약을 맺고 있다.

2001년 현재, 캐나다에는 603개의 자치체 경찰조직 중, 201개 자치단체는 연방경찰과, 85개는 Ontario州경찰과 계약을 맺고 있다. 비록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고 경찰력을 제공받고 있다 하더라도, 연방경찰 파견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accountability)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연방경찰과의 “계약에 의한 경찰력 파견제도”는 소위 지역사회경찰활동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

한편, 317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non-contract)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32,727명의 경찰관을 자치단체 스스로 채용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조직들은 비용절감, 효과적인 범죄예방, 경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접한 자치경찰과 광역화해나가고 있다.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에 의한 효과적인 통제와 州정부, 市의회로부터 경찰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자체 경찰에서는 경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경찰은 왕립 기소관과 협력적·상호의존적·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범죄자에 대한 起訴와 刑罰宣告에 딱 들어맞는 정보의 대부분을 수집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캐나다의 경우, 왕립기소관(Crown Attorney)은 미국이나 한국의 검찰과는 달리, 수사 기능을 갖지 않는 법원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캐나다에서 범죄 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다. 수사결과가 검찰청에 소송서류로 간략히 제출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소행위는 그야말로 수사의 완전성, 공정성 그리고 효과성에 달려 있다.

2001년 5월 1일 현재 연방경찰관의 계급별 비율에 따르면, 순경-경사급 비율이 92.1%에 달하고 있다. 한편, 밴쿠버경찰청의 경우, 순경-경장급이 85.5%, 순경-경위급까지는 약 96.5% 정도이다. 부서별 경찰관 배치비율과 관련, 밴쿠버 경찰(1,126명)의 사례를 보면, 방법경찰은 70.6%, 수사경찰 23.5% 그리고 행정지원 부서는 4%, 기타 1.1%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밴쿠버경찰청의 순찰부서 근무방식은 4교대제 방식이다(8일 동안 44시간근무). 즉 4일 동안 근무하고 4일간 연속 휴무하는 시스템이다. 캐나다의 여성경찰비율은 州마다 상이하지만, 10.7%~ 18.9%(British Columbia州)에 이르며, 전체 평균은 15.3% 정도 된다. 그리고 여성경찰관 비율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훌륭한 경찰관은 상식을 갖고, 성숙하게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통적인 경찰관 선발기준은 신체적인 요소들, 즉 신장, 체중, 연령 그리고 직업에 대한 비전 등이었지만, 요즘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구두면접, 거짓말탐지기Test, 특별한 전문영역 테스트, 인지능력 테스트, 심리테스트, 배경조사(범죄경력 포함), 신체적 민첩성, 의학적 검사(시력, 청력 등), 범죄경력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직 지원자의 학력요건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12년) 이상인 者를 지원요건으로 한다. 지원연령은 최저 연령은 18-21세, 최고연령은

35-65세까지 다양하다. 체격조건(신장, 몸무게, 시력)은 대체로 최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경찰의 경우, 체력검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경찰(RCMP)의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은 22주이며, 수료 후에 경찰관으로 임명을 받고,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한편, Ontario州의 순경급 기본교육은 17주이며, 시보기간은 12개월이다. 한편,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의 순경급 기본교육과정은 9개월 정도(35주)이다. 연방경찰의 순경급 기본교육 주요 내용은 문서작성, 응급 처치, 피의자호송, 무전기사용, 경찰견관리, 범죄수사분야, 호신술, 경찰역사 법률분야(형법 및 연방법규), 추적운전기법, 사격술 및 총기류 조작, 체력단련, 수영, 인간관계, 문화적 다양성, 인간행동과 경찰개입 등에 관한 내용이다.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에서는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35주)과 관련, 1단계 이론교육, 2단계 관서실습, 3단계 심화교육과정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분야는 법률분야 15.6%, 범죄수사 및 순찰기법분야 16.6%, 의사소통기법, 피의자체포관련 내용, 추적운전연습, 도로교통법규 및 사고조사요령, 사격술 및 화기류조작, 체력단련 등이다.

캐나다의 연방경찰과 州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에 의한 경찰력제공 관계, 경찰조직의 소속, 경찰력배치실태, 선발·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보다는 인성과 자질 파악에 중점을 둔 심층적 조사, 신규 교육과정, 계급별·부서별 배치비율, 순찰근무방식,

형사사법기관간 예산 동향과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신규임용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은

향후 한국경찰의 관련분야 제도개선과 연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국외문헌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Canadian Crime Statistics, 2001; 2002.  
 Canadian Center for Justice Statistics, Police Resources in Canada, 2002.  
 Dantzker/Mitchell, Understanding Today 's Police, Prentice Hall Canada Career & Technology: Scarborough, Ontario, 1998.  
 G. M. Pugh, The good police officer: Qualities, roles and concepts, i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4, 1986.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 ■ 인터넷 자료

<http://www.statcan.ca/english/pgdb/demo02.htm>  
<http://www.statcan.ca/english/Pgdb/demo18a.htm>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5.htm>  
<http://www.statcan.ca/english/Pgdb/legal13.htm>  
<http://www.rcmp-grc.gc.ca/recruiting/postings-e.htm>  
<http://www.rcmp-grc.gc.ca/html/organiz.htm#Organization>.  
<http://www.gov.on.ca/opp/recruit/english/oppbound.htm>.

(별첨) 캐나다 British Columbia州 경찰 순경급 기본교육 내용 및 수업시간

| 법률분야          | Block I 세부내용                     | 시간 | Block III 세부내용    | 시간 |
|---------------|----------------------------------|----|-------------------|----|
| Legal Studies |                                  |    |                   |    |
| 1             | Introduction to Law,             | 2  | Entrance Exam     | 2  |
| 2             | Introduction to Policing,        | 2  | Fraud/Forgery     | 4  |
| 3             | Reasonable Grounds               | 3  | Sex Offences      | 2  |
| 4             | Powers of Arrest                 | 10 | Weapons           | 5  |
| 5             | Compelling Court Appearance      | 2  | Liquor Act        | 2  |
| 6             | Printing/Photography             | 1  | Court Orders      | 3  |
| 7             | Powers of Arrest Exam            | 2  | Search Warrants   | 10 |
| 8             | Search & Seizure                 | 12 | Mid-term Exam     | 2  |
| 9             | Search & Seizure Exam            | 2  | Police Act        | 3  |
| 10            | Right to Counsel & Statements    | 4  | Homicide          | 2  |
| 11            | Use of Force                     | 3  | Defence           | 2  |
| 12            | Criminal Procedure               | 5  | Evidence          | 4  |
| 13            | Mid-term                         | 2  | Court Preparation | 2  |
| 14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 5  | Final Exam        | 2  |
| 15            | Domestics,                       | 3  | Court Day         | 7  |
| 16            | Offences Against Property,       | 5  |                   |    |
| 17            | Control Drug Substance Act       | 2  |                   |    |
| 18            | Young Offenders Act              | 2  |                   |    |
| 19            | Police Officer Centered Offences | 2  |                   |    |
| 20            | Final Exam                       | 2  |                   |    |

치 / 안 / 논 / 단 5

| 범죄수사 및 순찰분야<br>Investigation & Patrol | Block I 세부내용                           | 시간 | Block III 세부내용          | 시간 |
|---------------------------------------|--|----|-------------------------|----|
| 1                                     | Introduction to Patrol                 | 1  | Credit Cards            | 2  |
| 2                                     | Contact/Cover/FieldInterview           | 3  | Informants              | 3  |
| 3                                     | Photo Line-ups                         | 1  | Police Dogs             | 2  |
| 4                                     | Prisoner Transport                     | 1  | Cell Phone Fraud        | 2  |
| 5                                     | Family Violence                        | 3  | Sexual Assault          | 2  |
| 6                                     | Family Violence Tactics                | 2  | Bomb Calls              | 2  |
| 7                                     | Unknown Risk Vehicle Stops             | 2  | Ident Science           | 3  |
| 8                                     | Crime Scene Protection                 | 3  | Morality/Prostitution   | 3  |
| 9                                     | Stolen Autos                           | 2  | Asian Crimes            | 2  |
| 10                                    | Robbery & Home Invasion                | 2  | Outlaw Motorcycle Gangs | 2  |
| 11                                    | Sudden Death & Investigations          | 4  | Forensic Labs           | 4  |
| 12                                    | High Risk Vehicle Stops- Code 5        | 1  | Death Investigation     | 3  |
| 13                                    | Building Search/High Risk Arrest       | 3  | Hostage Negotiations    | 2  |
| 14                                    | High Risk Veh./ Building Search-Code 5 | 7  | FATS                    | 5  |
| 15                                    | Drug                                   | 3  | Simulations             | 24 |
| 16                                    | Morality/Sex Trade                     | 1  | Youth Gangs             | 4  |
| 17                                    | CPIC                                   | 3  | Hazmat                  | 7  |
| 18                                    | Simulations                            | 12 | Quiz & Exam             | 3  |
| 19                                    | Police Dogs                            | 1  |                         |    |
| 20                                    | Quiz & Exam                            | 2  |                         |    |

| 직업과 의사소통<br>Professionalism & Communication Skills | Block I 세부내용             | 시간 | Block III 세부내용           | 시간 |
|--|--------------------------|----|--------------------------|----|
| 1  | Introduction             | 2  | Block II Review          | 1  |
| 2  | Police Radio             | 1  | POP                      | 2  |
| 3  | Police Notebook          | 1  | Hate Bias                | 2  |
| 4  | Ethics                   | 4  | Policing Public Disorder | 2  |
| 5  | Power Crimes             | 1  | Harassment               | 4  |
| 6  | Public Contact           | 1  | Diversity Projects       | 7  |
| 7  | Problem Premises         | 1  | Schizophrenial           | 2  |
| 8  | Crime Scene Protection   | 3  | Elder Abuse              | 2  |
| 9  | Family Violence          | 3  | Suicide Prevention       | 2  |
| 10   | Community Based Policing | 3  | Conflict Resolution      | 4  |
| 11   | Investigation Reports    | 3  | Child Abuse              | 4  |
| 12   | Diversity                | 4  | Interviewing Skills      | 14 |
| 13   | Communicable Diseases    | 2  | POP Presentations        | 2  |
| 14   | ViCLAS                   | 2  | Mental Illness           | 3  |
| 15   | Public Contact           | 1  | Stress Management        | 3  |
| 16   | Comp Tacs                | 3  | Police and Leadership    | 3  |
| 17   | Comp Tacs Sims           | 5  |                          |    |
| 18   | Quiz                     | 2  |                          |    |
| 19   | Interview                | 2  |                          |    |
| 20   | FATS/Statements          | 4  |                          |    |

캐나다 경찰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신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체포와 통제<br>Arrest &Control | Block I 세부내용                | 시간 | Block III 세부내용            | 시간 |
|---------------------------|-----------------------------|----|---------------------------|----|
| 1                         | Force Options Theory        | 2  | Arm Levers/Stuns          | 3  |
| 2                         | Balance and Stance          | 1  | Handcuff/Search- I        | 2  |
| 3                         | Arm Levers                  | 2  | Throw /Take downs         | 2  |
| 4                         | Arm Levers                  | 2  | Pressure Point Compliance | 1  |
| 5                         | Handcuff/Search-1           | 2  | Ground Fighting           | 2  |
| 6                         | Handcuff/Search-2           | 2  | Ground Fighting           | 2  |
| 7                         | Wrists and Hands            | 1  | Baton                     | 2  |
| 8                         | Pressure Point              | 2  | LNR                       | 2  |
| 9                         | Close Quarter Confrontation | 4  | Positional Asphyxia       | 1  |
| 10                        | Stuns                       | 1  | OC Spray                  | 1  |
| 11                        | Take Downs                  | 2  | Handgun Retention         | 2  |
| 12                        | Ground Fighting - I         | 2  | Multiple Assailants       | 3  |
| 13                        | Ground Fighting-II          | 2  | confront. Situation       | 4  |
| 14                        | Baton- I                    | 2  | Edged Weapons             | 2  |
| 15                        | Baton-II                    | 2  |                           |    |
| 16                        | LNR- I                      | 2  |                           |    |
| 17                        | LNR-II                      | 2  |                           |    |
| 18                        | OC -Spray                   | 2  |                           |    |
| 19                        | Edged Weapons               | 4  |                           |    |
| 20                        | Handgun Retention           | 3  |                           |    |

| 사격, 총기훈련<br>Firearms Training | Block I 세부내용                         | 시간  | 비고   |
|-------------------------------|--------------------------------------|-----|--|
| 1                             | Safety                               | 1.5 |  |
| 2                             | Handgun/Ammunition Orientation       | 1.5 |  |
| 3                             | Nomenclature /Pistol Function Test   | 1.5 |  |
| 4                             | Administrative Loading/Unloading     | 1   |  |
| 5                             | Four Points of Marksmanship          | 2   |  |
| 6                             | Cleaning/Maintenance                 | 1   |  |
| 7                             | Leg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 1.5 |  |
| 8                             | Conditions of Carry/Draw and Holster | 1.5 |  |
| 9                             | Reloading                            | 1.5 |  |
|                               | Skills Practice                      | 4.5 | close distance, reloading, moving                          |
| 10                            | Stoppage                             | 1.5 |  |
|                               | Skills Practice                      | 3   | distance, barricades                                       |
| 11                            | Pistol Inspection/Function Test      | 1   |  |
|                               | Skills Practice                      | 5.5 | close quarter, one handed, distance, flashing, body armour |
|                               | Skills Practice                      | 5   | Prov. C.O.F. timed stage practice                          |
| 12                            | Mental /Phsycal Conditioning         | 2   |  |
|                               | Skills Practice                      | 3.5 | Prov. COP timed  |
|                               | Testing                              | 2   | written exam/pistol inspection/ function test              |
|                               | Qualification-Prov.C.O.F.X2          | 1   |  |

치 / 안 / 논 / 단 5

| 추적운전<br>Driver Training | Block I 세부내용                    | 시간 | Block III 세부내용 | 시간 |
|-------------------------|---------------------------------|----|----------------|----|
| 1                       | Introduction-Road Sense Driving | 7  | Driving-Track  | 21 |
| 2                       | Drive with Fitness              | 7  |                |    |
| 3                       | Vehicle Dynamics & Control      | 2  |                |    |
| 4                       | Pertrip & Orientation           | 1  |                |    |
| 5                       | Steering and Braking            | 2  |                |    |
| 6                       | Skills Practice                 | 3  |                |    |
| 7                       | Response Course-Practice        | 3  |                |    |
| 8                       | Emergency Vehicle Equipment     | 2  |                |    |
| 9                       | Skills Practice                 | 2  |                |    |
| 10                      | Decision & Reaction             | 2  |                |    |
| 11                      | Skills Practice                 | 2  |                |    |
| 12                      | Backing, Turing & Parking       | 2  |                |    |
| 13                      | Skills Practice                 | 3  |                |    |
| 14                      | Qualifying                      | 4  |                |    |

| 생활 및 체력단련<br>Lifestyle, Fitness/Drill | Block I<br>세부내용   | 시간 | Block III 세부내용    | 시간 |
|---------------------------------------|-------------------|----|-------------------|----|
| 1                                     | Backcare          | 2  | Physical Training | 26 |
| 2                                     | Nutrition         | 2  | POPAT             | 4  |
| 3                                     | Running           | 2  | Drill             | 12 |
| 4                                     | POPAT             | 4  |                   |    |
| 5                                     | Physical Training | 14 |                   |    |
| 6                                     | Drill             | 10 |                   |    |

| 교통사고, 법규<br>Traffic Studies | Block I<br>세부내용                   | 시간 | Block I<br>세부내용            | 시<br>간 |
|-----------------------------|-----------------------------------|----|----------------------------|--------|
| 1                           | MV Act & Regulations              | 2  | Accid. Invest-Level 1      | 3      |
| 2                           | Drivers Licences                  | 2  | Collision Investigation    | 8      |
| 3                           | MV Regs. Licensing & Insurance    | 2  | RADAR                      | 6      |
| 4                           | Offences-MV Act & Regulations     | 5  | ASD                        | 6      |
| 5                           | Proh., Disq., &Suspended Drivers  | 2  | Impaired Investigation     | 3      |
| 6                           | Admin. Driv. Prohib.              | 3  | Traffic Court              | 2      |
| 7                           | Traffic Tickets                   | 4  | Impaired Court             | 3      |
| 8                           | Impaired Driving                  | 7  | Directing Traffic          | 1      |
| 9                           | Driver Training- Accident Reports | 3  | Indefinite Lic. Suspension | 2      |
| 10                          | EVOG                              | 7  |                            |        |